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B+C +D+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 경고 (E)			
					계 (A =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 처분의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 경고 (E)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팅 (라)							
44	14 (25명)	1 (1명)	13 (24명)	28	21 (4,532)	10 (4,532)	3 (2,472)	2 (666)	2 (157)	3 (1,237)	11	6	-	1	-	2	-

2. 주요 지적사항

①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원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②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m³(생산량의 47%)를 납품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m³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③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초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④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5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6]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 ○○)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7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8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9]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주)○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10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 실시
- 「건설폐기물법」 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11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걸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12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주)○○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13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14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 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 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①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②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주)○○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③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군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km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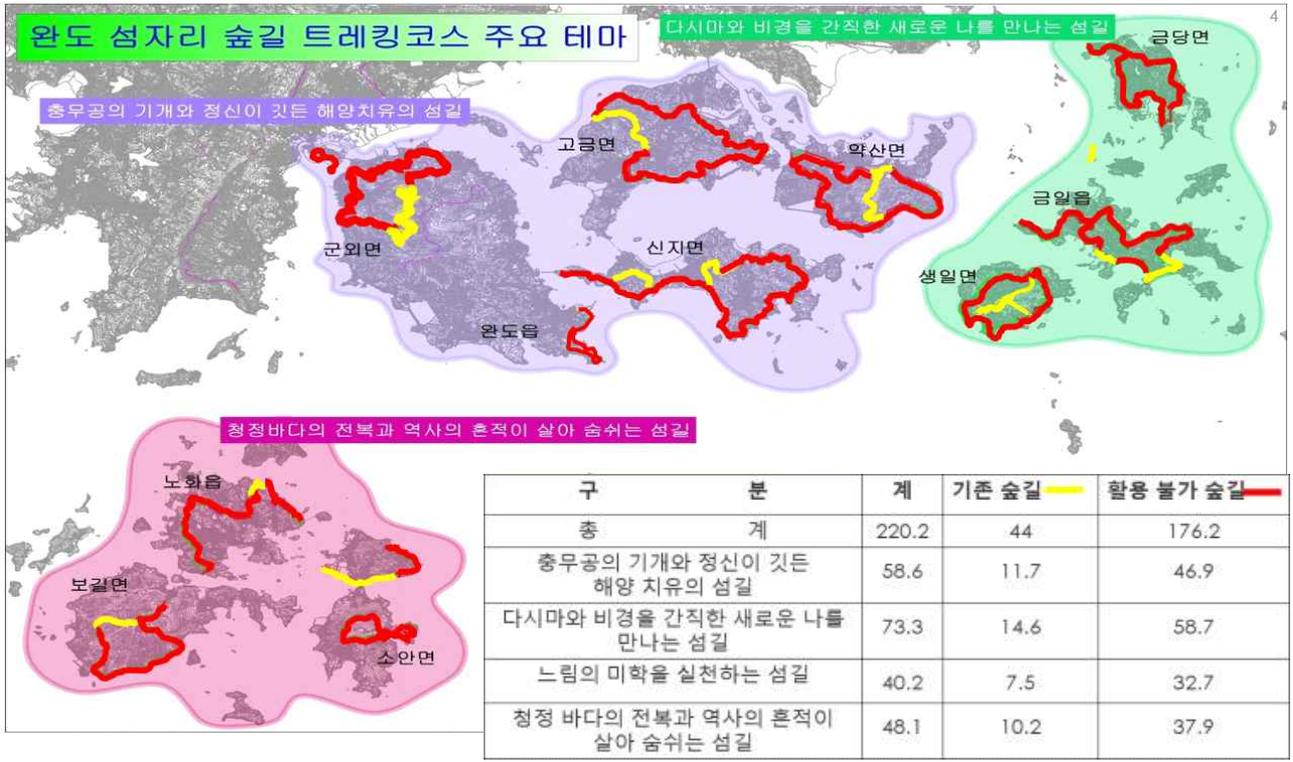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2 |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 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주)○○○○○○○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5. 처분요구서

목 차

①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50
②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58
③ ○급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64
④ 토석채취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67
⑤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76
⑥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99
⑦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05
⑧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09
⑨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시정)	118
⑩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37
⑪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151
⑫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238
⑬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주의)	242
⑭ 체육시설업 및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시정)	246
⑮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250

⑩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부적정(훈계, 시정)	264
⑪	○○양식 어업권 관리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275
⑫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285
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290
⑭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징계, 훈계, 시정, 주의, 통보)	296
⑮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훈계, 시정)	314
⑯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훈계, 시정)	319
⑰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324
⑱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329
⑲	건축물 정기점검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339
㉑	공공건축사업 용역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345
㉒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348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경제교통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완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9. 4월부터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또한 완도군은 상품권을 지류형으로 1만원·5만원권 등으로 발행 중이고, 상품권 발행액은 2021. 4월말 기준으로 [표 1] “2019 ~ 2021년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명세”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97,200백만원이며, 할인율은 1~10%의 범위로 지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표 1] 2019 ~ 2021년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명세

(단위 : 백만원)

연도	발행액			판매액			사용액(환전액)		
	계	지류	전자	계	지류	전자	계	지류	전자
계	97,200	97,200	0	79,871	79,871	0	75,850	75,850	0
2019	15,000	15,000	0	4,126	4,126	0	3,213	3,213	0
2020	49,000	49,000	0	52,873	52,873	0	50,733	50,733	0
2021	33,200	33,200	0	22,872	22,872	0	21,904	21,904	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

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되며,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개별가맹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소위 ‘상품권 깡’)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4조 따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와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 하는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000, 2021. 00. 00.)하였고, 전남도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000(2021. 00. 00.)로 완도군을 포함한 도내 22개 시·군에 같은 내용을 시달하였다.

따라서 완도군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상품권 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경제교통과)은 2021. 5월 전남도 종합감사 기간에 완도사랑상품권 부정가맹점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도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프로그램¹⁾’을 이용해 실시한 결과,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²⁾ 중 [별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명세”와 같이 25개 업체가 가족(배우자, 자녀) 등 지인을 통해 소위 ‘상품권 깡’ 행위로 77,610천원을 부정유통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2019. 10월부터 2020. 7월까지 12개 가맹점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하면서 상품권 할인액 4,147천원에 대한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남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 계획 공문(중소벤처기업과-000(2021. 00. 00.))과 관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계획’(경제교통과-00000, 2021. 00. 00.)을 수립해 2021. 3. 16.부터 3. 31.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전산시스템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지만, 과태료 부과와 환수 등 처분실적이 전혀 없다고 전남도에 단속 결과를 제출(완도군 경제교통과-00000, 2021. 00. 00.)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완도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과 사용자의 ‘상품권 깡’ 등에 대한 처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1) 구매업체 : ○○○○공사, 계약기간 : 2021. ○월 ~ 2021. ○월

2) 개인이 상품권을 구입해 1개의 개별가맹점(미용업, 소매점 등)에서 5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에 대해 ‘완도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완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25개 업체)과 사용자(46명, 112회)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률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상품권 할인액 환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2019. 10월부터 2020. 7월까지 12개 가맹점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하면서 환수하지 않은 상품권 할인액 4,147,5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훈계대상자 완도군 ○○○○과 지방○○주사 ○○○

완도군 ○○○읍 지방○○사무관 ○○○

완도군 ○○○면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2019. 1월부터 2020. 12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등 5개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35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처리하였다.

또한 2018. 7월부터 2021. 3월까지 경징계 요구된 6급 이하 17명의 직원에 대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였다.

지방○○주사 ○○○은 2020. 1. 3.부터 2021. 1. 3.까지 ○○○○○○○○실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 처리 업무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은 2019. 7. 8.부터 2021. 1. 3.까지 ○○○○과에서 ○○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사무관 ○○○은 2017. 7. 14.부터 2018. 9. 3.까지 ○○○○과에서 ○○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에 대한 피의사건 부당 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건 통보 결과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일 경우에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 「완도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완도군근로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19. 1월부터 2020. 12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목포지청에서 통보받은 [표 1] “소속 직원의 구약식 처분과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부당 처리 명세”와 같이 구약식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4건)와 완도군근로자징계위원회(1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와 ‘훈계’(1건) 처분을 하였다.

[표 1] 소속 직원의 구약식 처분과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부당 처리 명세

연번	대상자		통보기관				기획예산담당관 처리내역
	직급	성명	기관명	처분일자	죄명	처분내용	
1	○○직	○○○	해남지청	2019-00-00	○○○○법 위반	○○○	훈계
2	행정○급	○○○	해남지청	2019-00-00	○○○○법 위반	○○○	주의
3	시설○급	○○○	해남지청	2020-00-00	○○○○법 위반	○○○	주의
4	수산○급	○○○	목포지청	2020-00-00	○○○○법 위반	○○○	주의
5	행정○급	○○○	해남지청	2020-00-00	○○○○법 위반	○○○	주의

제출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징계요구부서(기획예산담당관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완도군 인사위원회와 완도군근로자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소홀히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 제1호가 및 제4호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 및 시·도와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20. 00. 00.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처분된 지방○○5급 ○○○의 ‘○○○○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 통보건을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

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20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하였다.

또한 2020. 00. 00.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처분된 지방○○5급 ○○○, 지방○○6급 ○○○, 지방○○6급 ○○○, 지방○○7급 ○○○ 등 4명이 연관된 ‘○○○○○ 등에 대한 구약식 처분 통보 건은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임과 동시에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이므로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2020. 00. 00. 지방○○5급 ○○○의 징계 사건과 관련된 지방○○6급 ○○○과 지방○○7급 ○○○는 부당하게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였고, 2020. 00. 00. 지방○○5급 ○○○과 지방○○6급 ○○○는 2020. 00. 00. 부당하게 자체 ‘훈계’ 처분하였다.

한편 총무과(舊 자치행정과)는 2020. 00. 00. 징계요구부서(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요구받은 지방○○6급 ○○○과 지방○○7급 ○○○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 건은 2020. 00. 00.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통보받은 ‘○○○○○’ 등과 관련한 지방○○5급 ○○○, 지방○○6급 ○○○, 지방○○6급 ○○○, 지방○○7급 ○○○ 등 4명의 구약식 처분에 따른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임을 징계의결 요구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징계요구부서(기획예산담당관)에 징계의결 요구 반려 등 조치를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지방○○6급 ○○○, 지방○○7급 ○○○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 건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2020. 00. 00.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 법령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 및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18. 00. 00.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서 ○○○○ 등 사용’ 건과 관련하여 지방 ○○7급 ○○○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지방○○6급 ○○○에 대한 경징계 요구 건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임과 동시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이므로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전라남도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지방○○7급 ○○○만 2018. 00. 00.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전라남도로부터 ‘경징계’가 요구된 지방○○6급 ○○○은 2018. 00. 00. 부당하게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한편 총무과(舊 자치행정과)은 2018. 00. 00. 징계요구부서(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요구받은 지방○○6급 ○○○에 대한 ‘경징계’ 요구 건은 2018. 00. 00.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 등 사용 건과 관련한 지방○○7급 ○○○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임을 징계의결 요구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징계요구부서(기획예산담당관)에 징계의결 요구 반려 등 조치를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지방○○6급 ○○○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 건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2018. 00. 00.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징계 사건의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 지방○○사무관 ○○○, 지방○○사무관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징계업무 추진 시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직급과 징계양정에 따른 징계관할에 있어 징계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급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2019. 00. 00. 지방△△○급 공무원 6명을 지방△△○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한 후 2020. 00. 00.에 3명을, 2020. 00. 00.에 나머지 3명을 지방△△○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70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 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급 공무원을 ○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횡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급 기본교육과정 훈련 성적(30%)을 반영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 후 임용순위 명부 순위대로 임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총무과)은 2019.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지방△△○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되어 ○급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수료한 6명 중 우선 3명을 2020. 00. 00. 지방△△○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승진대상자 선정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 70%와 ○급 기본교육과정 훈련성적 30%를 반영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대로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데도, 승진후보자 명부 성적 70%에 해당하는 점수를 승진대상자 선정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점수가 아닌 ○급 기본교육훈련을 수료 이후 추가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점수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에 부당하게 반영하여 당초 승진대상자 6명 중 승진임용순위가 법령상 ○위인 ‘○○○’과 ○위인 ‘○○○’를 ○위인 ‘○○○’과 ○위인 ‘○○○’보다 먼저 승진임용하고, ○위인 ‘○○○’과 ○위인 ‘○○○’은 2020. 00. 00. 승진임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승진임용 지연자의 급여 등에 손해를 유발하고, 지연 기간 중에 징계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승진임용을 못할 수도 있는 경우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앞으로 ○급 승진임용 명부 작성에 있어 인사법령에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토석채취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환경산림과)

훈계대상자 완도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2020. 00. 00. ○○○○(주)에게 완도군 완도읍 ○○리 산○○번지 일원에 대하여 [표 1] “○○○○(주) 토석채취허가 개요”와 같이 2016. ○○월부터 2019. ○○월까지 허가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도서개발사업 사용 목적으로 2020. ○○월부터 2023. ○○월까지 연장허가 하였다.

[표] ○○○○(주) 토석채취허가 개요

구분	허가목적	기간	면적 (㎡)	수량 (㎡)	허가업체	비고
최초허가	공용·공공용사업	2016. 00. 00.~2019. 00. 00.	00,000	000,000	○○○○(주)	2019. 00. 00. 대표자 변경 (○○○→□□□)
연장허가	도서개발사업	2020. 00. 00~2023. 00. 00.	00,000	000,000	○○○○(주)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은 2020. 7. 1.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허가 관련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관련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취소 또는 토석채취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토석채취 허가사항에 대하여 당초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현장방문 및 관련서류 검사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환경산림과)은 ○○○○(주)에서 [별표] “2020년부터 2021까지 토석채취 생산 골재의 목적 외 사용 명세”와 같이 토석채취 연장허가 목적인 도서개발사업 사용이 아닌 ‘완도군 ○○○ 정비사업’ 등에 총 167회에 걸쳐 총 생산량 26,634m³ 중 12,532m³(생산량의 약 47%)를 허가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토석채취 1개월 중지 등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도서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를 타 지역에서 비싼 가격(m³당 11,000원 → m³당 17,000원 내외)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표 2] “골재가격 상승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명세”와 같이 총 75,192천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골재가격 상승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명세

(단위 : 천원)

목적 외 골재 사용량(m ³) (A)	토석채취허가지에서 골재 납품 시		타 지역에서 골재 납품 시		골재납품 차액 (E-C)
	토석채취장 골재납품가격(m ³ 당) (B)	총 골재구입 가격 (C=A×B)	골재납품가격(m ³ 당) (D)	총 골재구입 가격 (E=A×D)	
12,532	11,000	137,852	17,000	213,044	75,192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목적 외 사업에 납품 한 ○○○○(주)에 대하여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경제교통과)

훈계대상자 완도군 ○○면 지방○○주사보 ○○○

완도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은 2018. 1. 9.부터 2018. 9. 3.까지 ○○○○과에서 화물자동차 인·허가 관련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서기 ○○○은 2020. 7. 1.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화물자동차 인·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차고지 등이 확보 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별표 1] 2. 개별기준 제4호에 따라 1차때는 사업전부 정지(30일), 2차때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환수 조치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¹⁾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면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를 하고 차고지 설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운송자격 취소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받아야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제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①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②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그런데 완도군(경제교통과)은 [표 1] “차고지 설치기간 도과 명세”와 같이 총 12명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 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를 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등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1] 차고지 설치기간 도과 명세

연번	상 호	차고지 면적(㎡)	차고지 설치기간	도과일수
1	○○○	150	2016.00.00.~2020.00.00.	442
2	(주)○○○○테크	100	2016.00.00.~2018.00.00.	1124
3	○○○○	600	2016.00.00.~2017.00.00.	1409
4	○○○	30	2017.00.00.~2018.00.00.	1163
5	○○○○	30	2017.00.00.~2018.00.00.	1141
6	○○○○	52	2018.00.00.~2020.00.00.	441
7	○○○○	430	2018.00.00.~2019.00.00.	772
8	(주)○○	5,000	2019.00.00.~2021.00.00.	121
9	○○○	33	2019.00.00.~2020.00.00.	288
10	○○○	25	2019.00.00.~2020.00.00.	261
11	○○○	25	2019.00.00.~2020.00.00.	261
12	○○○	25	2019.00.00.~2020.00.00.	261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2] “화물운송자격 취소·정지대상자 행정처분 미처리 명세”와 같이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자격 취소·정지대상자 총 26명 중 4명에 대하여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표 2] 화물운송자격 취소·정지대상자 행정처분 미처리 명세

연번	성 명	면허취소일	취 소 사 유	비고
1	○○○	2018.00.00.	음주만취운전	면허정지로 변경 (2018.00.00.~00.00.)
2	○○○	2019.00.00.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	
3	○○○		확인불가 (경찰청에 자료 요청 후 확인 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 근거
4	○○○		확인불가 (경찰청에 자료 요청 후 확인 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 근거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더구나 화물운송자격 취소·정지 대상자 중 ○○○에게는 [표 3] “유가보조금 부정지급 명세”와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18. 8월부터 2018. 11월까지 총 19건(1,120,707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3] 유가보조금 부정 지급 명세

연번	청구년월	매출건	매출액	개인청구	정부지원	사용량(ℓ)
		19건	5,067,300	3,946,593	1,120,707	3,444
1	2018.08.	5	1,350,300	1,026,225	324,075	937.88
2	2018.09.	2	596,000	455,427	140,573	406.82
3	2018.10.	6	1,558,000	1,198,493	359,507	1,040.42
4	2018.11.	6	1,563,000	1,266,448	296,552	1,059.06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화물자동차가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일부 자격없는 화물운송 사업자가 위법한 상태로 사업을 계속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가 실추되었다.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따르면 화물·여객차주는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

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화물·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1일 4회 이상 주유, 1일 120리터 초과 충전 등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 될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화물·여객차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경제교통과)은 2018년부터 2021. 4월까지 [별표 1] ~ [별표 9] “유형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명세”와 같이 총 240건(2,197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가능하도록 방조함으로써 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화물자동차 인·허가 관련 업무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과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 미달 대상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거래 내역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9]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상하수도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모든 군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준공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하수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효력을 상실하고,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자는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준공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따라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 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별표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미준공 명세”와 같이 신고 또는 허가 수리 된 총 50건이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처리 되지 않고 있는데도 신고인에게 효력 상실 통보(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지 않고 있다.

3.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 중지 또는 수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수질검사 대상은 생활용수로서 양수능력이 30톤/일 이상, 공업용수로서 양수능력이 30톤/일 이상, 농·어업용수로서 100톤/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수질검사 주기는 준공 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음용수는 2년(양수능력이 30톤/일 이하는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 중지 또는 수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별표 2]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미이행 명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대상 18개소(농·어업 용도 9개소, 생활용수 6개소, 공업용수 2개소, 기타 1개소)가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지 못하여 모든 군민이 누려야 할 양질의 지하수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준공예정 기한이 초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않았거나 준공신고와 정기 수질검사를 미이행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주의요구

제 목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경제교통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8년에 ○○○○○○○를 ○○기업으로 선정하고 [표] “○○기업 ○○○○○○○ 지원 명세”와 같이 2018년에 보조금 50,000천원을 교부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였다.

[표] ○○기업 ○○○○○○○ 지원 명세

(단위 : 천원)

지원 연도	○○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군비	
2018	○○○○○ ○○	○○○	창고 건축, 종이박스, 포장지	60,000	50,000	25,000	7,500	17,500	10,00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있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IV. 세부 운영방안 6. 사업비 지원, 집행 및 정산 편에 따르면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필수서류¹⁾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필수서류를 제출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경제교통과)은 2018. 00. 00 ○○기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해조류 저장창고 및 작업장 신축 등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자로부터 필수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기업 지원 약정서와 전남도에서 통보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만 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50,000천원을 교부하였다.

그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보조금을 교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기업 정산검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1) ① ○○기업 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② ○○기업 지원 약정서 ③ (최종)○○기업 사업 계획서, ④ 법인 명의의 통장(보조금<자부담 포함>, 수익금) 사본 각 1부씩 총 2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⑦ 한국○○기업협회 가입확인증 사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관서의 장은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IV. 세부 운영방안 6. 사업비 지원, 집행 및 정산편에 따르면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적증빙을 위한 최종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집행영수증(지출품의서, 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영수증), 보조금통장(자부담 포함), 수익금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의 목적,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 여부,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부적격 사용금액 유무 등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경제교통과)은 2018. 00. 00.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지출품의서, 견적서, 보조금통장, 수익금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 정산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검토와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채 정산검사 후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앞으로 ○○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시 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세무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1] “지방세 부과·징수 명세”와 같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8년	610,294	605,295	425	4,574
2019년	702,221	697,069	497	4,655
2020년	756,738	753,101	247	3,390

자료: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에 한하여 임시용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정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세무회계과)은 [별표 1]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명세”와 같이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해당 임시용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33건 26,798,590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

3. 귀농인 취득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①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취득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 농지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으로 주소를 이전했는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취

득일부터 2년 이내 영농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방세 감면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세무회계과)은 2021. 5. 28. 감사일 현재 [표 2] “귀농인 감면 부동산 취득세 추징대상 명세”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4명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1명은 감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등 지방세 감면 조건을 위반하였는데도 감면분 취득세 9,608,040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표 2] 귀농인 감면부동산 취득세 추징대상 명세

(단위 : 원, 2021. 5. 24. 기준)

연번	과세대상(토지)	납세자	취득일 (주소이전일)	추징대상 취득세액	추징사유
계	6건	5명		9,608,040	
1	○○읍 ○○리 000-0번지(토지 1,060㎡)	○○○	2019.00.00. (2020.00.00.)	413,360	주소이전 (경남 ○○)
2	○○면 ○○리 000-00번지(토지 755㎡)	○○○	2019.00.00. (2019.00.00.)	115,800	“ (광주 ○○)
3	○○면 ○○리 000번지(토지 1,113㎡)	○○○	2019.00.00. (2020.00.00.)	454,980	“ (부산 ○○)
4	○○면 ○○리 000번지(토지 2,006㎡)	○○○	2017.00.00. (2020.00.00.)	287,650	“ (경기 ○○)
5	○○면 ○○리 000-0번지(토지 992㎡)	○○○	2019.00.00.	4,168,500	영농 등 미사용
6	○○면 ○○리 000-0번지(토지 992㎡)	○○○	2019.00.00.	4,167,750	영농 등 미사용

자료: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4. 농업법인의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해당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영농·유통·가공 등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세무회계과)은 2021. 5. 28. 감사일 현재 [별표 2]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감면목적 외 사용 명세”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취득세 감면 목적(영농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15건 34,776,190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5. 어업법인의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어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해당 어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영어·유통·가공 등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1년 이내 직접 사

용하지 않거나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세무회계과)은 2021. 5. 28. 감사일 현재 [별표 3] “어업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감면목적 외 사용 명세”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어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취득세 감면 목적(영어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3건 13,089천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부과(추징)되어야 할 지방세가 누락되어 공평 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위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부과(추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부과(추징) 누락된 취득세 84,271,420원을 부과(추징)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세무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수영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광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관람석 없는 수영장 운영수익 및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영장 및 임대수익 사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비와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세무회계과)은 [표 1]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명세(2016~2020년)”와 같이 관람석 없는 수영장 및 수익사업용 임대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약 758,362,005원¹⁾이 발생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표 1]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명세(2016~2020년)

(단위 : 원, 2021. 5. 28.기준)

사업장명	준공일	공급비 (공급액)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대상)	비고 (업종)
계		7,583,620,045	758,362,005	
○○○형 학교 ○○○ 체육관	2019.00.00.	7,264,577,526	726,457,754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신지 ○○○○ ○○○○○ (시설 개·보수)	2014.00.00.	236,009,792	23,600,978	부동산임대업
군외 ○○○센터 (시설 개·보수)	2010.00.00.	83,032,727	8,303,273	부동산임대업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완도군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환급받아 세입조치 하여야 할 상당한 금액이 지방세입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야기하였다.

1) 회계사(세무사) 협조를 받아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 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세무서의 환급액 인정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음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빠른 시일 내 관리부서와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위 부동산의 매입 부가가치세 약 758,362,005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 하고, 앞으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세무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¹⁾」(이하 “회계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²⁾ 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관리 규정」 제77조 제1항에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해당 금원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같은 조 제4항에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같은 조 제6항에 출납원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 편입을

1) 개정(2020. 12. 23.)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라 함

2)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 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에게 1회 이상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보관 시기가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자에게 ‘반환청구 할 것’을 채권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에 1회 이상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세무회계과)은 [별표 1] “보관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 명세”와 같이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보관금 등 18건 71,877,429원 대하여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 반환청구 가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하고 있다.

또한 [별표 2] “세입처리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 명세”와 같이 사무관리상 일시보관금으로, 즉시 세입처리하여야 할 208건 336,631,385원을 세입처리 않는 등 지방세입을 누락하고 있다.

그 결과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방세입으로 편입되지 못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권에게 반환청구 가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지방행정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18건 71,877,429원과 즉시 세입조치 가능한 208건 336,631,385원 등 총 408,508,814원을 세입조치하고,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경제교통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등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의무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등을 미가입한 자동차보유자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¹⁾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법령 위반자에게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최소 9천원부터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1)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3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보험개발원 제공)을 해당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등 가입명령서(또는 가입촉구서)를 발송

따라서 완도군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고, 미가입한 일수를 확인하여 [별표 1] “자동차 의무보험 등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경제교통과)은 2020. 7월부터 2021. 1월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무보험 가입 내역 자료를 총 21회 통보받았는데도 [별표 2] “2020 ~ 2021년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내역 원데이터 수신 명세”와 같이 4회만 수신하고 17회는 수신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17회에 해당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세외수입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등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완도군은 2021. 5. 28. 감사일 현재 [별표 3] “2020 ~ 2021년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 미수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 처분하여야 할 과태료 947건 53,614,400원을 누락²⁾하였다.

또한 이번 완도군 종합감사 기간 중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위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 미수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누락 명세”와는 별도로 [별표 4] “최근 3년 간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을 수신 후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자동차 보유자 951명에게 2,959건, 508,278,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미부과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기간³⁾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2) 완도군(경제교통과)은 감사관의 요청에 따라 2021. 5. 14.부터 5. 25.까지 기간에 자체 확인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전 재검토 과정에서 일부 누락 건수와 금액이 변경이 될 수 있음

3) 일정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을 말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한 차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경제교통과)은 [별표 5]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부과 대상인 120명, 126건 19,86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부과 누락된 과태료 581,752,600원에 대한 부과 처분과 2020. 7월부터 2021. 1월까지 미수신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보를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처분 하고(시정)
-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별표2]

[별표 1] ~ [별표 5] 생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

훈계대상자 ① 완도군 ○○○과 지방○○서기 ○○○

② 완도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완도읍 ○○리 ○○○공원 일대의 경관 개선을 위하여 “○○○공원 ○○○ 조성사업”(이하 “○○○공원 사업”이라 한다)을 2019. 00. 00.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50,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지방○○서기(現 지방○○주사보) ○○○은 2018. 9. 4.부터 2020. 1. 2.까지 ○○○과에서 용역계약 업무담당자로, 지방○○서기 ○○○는 2019. 7. 8.부터 2020. 6. 30.까지 ○○○과에서 ○○○공원 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부적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에 한하여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지역개발과)은 [표 1] “○○○공원 사업 공정별 계약 명세”와 같이 전체 사업비(250,000,000원)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용역 부분은 디자인개발비에 해당되는 4.4%(11,000,000원)에 불과하고, 사업의 71.2%(178,000,000원)는 조경·토목 공사 등인데도 위 사업 전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계약 부서인 세무회계과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와 용역이 혼합된 ○○○공원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산업디자인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로 제한하여 2019.

00 .00. 입찰 공고¹⁾한 후 종합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유)○○○연구소 ○○와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 1] ○○○공원 사업 공정별 계약 명세

(단위 : 원)

구분	공정별	계약금액	비율(%)
	계	250,000,000	100
공사	1. 조경공사	57,000,000	71.2
	2. 조형공사	51,000,000	
	3. 토목공사	64,000,000	
	4. 전기조명공사	6,000,000	
용역	5. 디자인개발비	11,000,000	4.4
기타	6. 제경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61,000,000	24.4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하여 계약법령 취지를 훼손시켰고, 무자격자가 공사를 추진하여 부실 시공의 우려와 해당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차량과 군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감독업무 및 준공검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준공검사 요청이 들어오면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에서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

1) 완도군 공고 제2019-000호, 추정가격 000,000,000원(개찰 2019. 00. 00.)

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공원 사업의 공사공정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공정이 설계서에 따라 해당 공정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지역개발과)은 ○○○공원 사업을 공사가 아닌 용역으로 발주함에 따라 설계서가 누락되었고 결국 감독·준공 검사 공무원이 설계서 없이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조형물 제작 설치(GRC) 등은 세부 제작 규격(두께, 함량 등) 및 기준이 누락되어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육안 점검 등을 통하여 감독²⁾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계약목적물의 완성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업무연찬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후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공원 사업 계약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 지방○○서기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2) 감독공무원 ○○○○과 ○○○급 ○○○, 검사공무원 ○○○○과 ○○○급 ○○○

전라남도 주의요구

제 목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세무회계과, 관광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2020 완도 ○○○○&○○○○(이하 ”○○○○ 행사”라 한다) 추진을 위해 ○○○○ 행사대행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공고하였고, 입찰한 참가한 3개 업체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2020. 00. 00. (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표 1] 2020 완도 ○○○○&○○○○ 종합평가 집계표

업체명	합계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순위	비고
		정량(20점)	정성(70점)			
(주)○○	82.5	17.4	55.2	9.92	1	
(주)○○○○○	82	16	56	10	2	
(주)○○○○○○○	68.6	14	45.2	9.46	3	협상평가 부적격자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2020. 5. 19.부터 2차례의 기간 연장을 통하여 2020. 6. 29.까지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2020. 7. 2. (주)○○와 273,944,000원에 신지명사십리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하여 완도를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목적의 “2020 ○○○극장&○○○○○”(이하 “○○○○○ 행사”라 한다)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을 부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3절 7. 협상 절차에 따르면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8. 협상 진행에 따르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추진할 시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을 추진하여 협상기간 내에 협상 종료 후 계약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제안 내용으로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신규 입찰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세무회계과)은 [표 2] “당초 제안 사업과 최종 계약 사업 비교 명세”와 같이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 행사”가 아닌 당초 과업과 계약명 및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과업인 “○○○○○ 행사”로 계약상대자인 (주)○○와 2020. 00. 00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당초 제안 사업과 최종 계약 사업 비교 명세

구 분	당초 제안(2020. 00. 00. 공고)	최종 계약(2020. 00. 00.)
사업명	2020 완도 ○○○○&○○○○○	2020 ○○○극장 및 ○○ ○○○○
사업기간	2020. 00. 00. ~ 2020. 00. 00.(11주간)	○ ○○○극장 :2020. 00. 00. ○ ○○ ○○○○ : 2020. 00. 00. ~ 00. 00.
사업예산	290,000,000원(부가세 포함)	273,944,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장소	○ ○○○○ : 해변공원 야외음악당, 완도전통시장(5일시장), 노화·보길 ○ ○○○○ :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00.00.)	○ ○○○극장 : 신지명사십리 제2주차장 ○ ○○ ○○○○ : 신지명사십리 해상 바지선
사업내용	○ ○○○○ : 마술쇼, 코미디쇼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가미한 차별화된 주말참여 프로그램 ○ ○○○○: 식전퍼포먼스, 축하공연 및 댄스 등	○ ○○○극장 : 영화상영 및 푸드트럭 운영 ○ ○○ ○○○○ : 완도 관광 홍보영상 송출(주간) 및 영화상영(야간)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사업부서인 관광과는 당초 제안 사업의 제안서 내용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거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임의 판단하여 해당 사업의 취소 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 방법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결국 ○○○○○ 행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과업에 맞는 신규 공고, 제안 요청 및 제안서 평가 등 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세무회계과에 계약의뢰 하였고, 세무회계과는 [표 3] “○○○○ 행사 협상조서 주요 내용”과 같이 관광과의 계약의뢰 공문접수 당시 첨부된 협상조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20. 00. 00. (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2020 완도 ○○○○&○○○○ 대행사 선정 협상조서 주요 명세

구 분	당초 제안내용	조정안
명칭변경	◦ 2020 ○○○○&○○○○	◦ ○○ ○○○극장 & ○○○○○
행사기획	◦ 비말전파 행위를 지양하는 비대면 방식의 행사 (이벤트)기획 ◦ 행사의 성공전략, 실현가능성 및 독창성 ◦ 행사환경에 맞는 조명, 음향장비 설치 및 운영 방안 제시	◦ 생활 속 거리두기형 이벤트 추진 ◦ 최고의 사양 및 안전중심의 시스템 구축
가격	◦ 업체 제안 가격 000,000,000원	◦ 조정가격 000,000,000원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취지가 훼손되었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지방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하락시켰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체육시설업 및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체육진흥과, 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표 1] “완도군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명세”와 같이 2021. 5. 28. 감사일 현재 관내 체육시설업 46개소에 대하여 지도·관리하고 있다.

또한 [표 2] “완도군 사설화장시설 등 신고 수리 명세”와 같이 2010. 1월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90개소의 사설화장시설 등 설치를 수리하는 등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표 1] 완도군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명세

(단위 : 개소)

계	당구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46	21	10	9	4	1	1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완도군 사설화장시설 등 신고 수리 명세

(단위 : 개소)

계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90	81	-	3	6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6호 및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체육시설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체육진흥과)은 완도경찰서로부터 ○○당구장의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자 적발 통보공문을 2020. 00. 00. 받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보관하던 중 적발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적발 통보 공문을 2021. 00. 00. 수신하였는데도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지 않고 있다.

3. 사설방안시설 행정처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설화장시설 또는

시설방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화장시설 또는 시설방안시설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시설화장시설 또는 시설방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구성자에게 방안시설 등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른 묘지·방안시설 등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방안시설의 연고자에게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화장시설 또는 시설방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 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시설방안시설 등을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묘지·방안시설의 연고자에게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주민복지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 1)하여 시설방안시설을 설치한 ‘사단법인 대한○○○○중’에게 위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시설방안시설을 2020. 00. 00.까지 이전하도록 3차례에 걸쳐 통지하였으나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

1) 완도군 주민복지과-000000(2019.0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자 행정처분 계획
- ○○단체 자연장지 조성 이행통지를 받은 후 설치변경 신고 없이 종교단체 불법 시설방안시설(방안담) 설치

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설봉안시설 설치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신규 기초연금 지급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이내에 가구별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며,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군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았거나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거나 상계처리하고, 수급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 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었거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지급방식에 따르면 사전 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신청일 속하는 달 이후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이 되었는데도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사망, 결혼 또는 이혼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당하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주민복지과)은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로 ○○면에 거주하는 ○○○ 등 13명에게 [표 1] “신규 기초연금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적게는 1개월분에서 많게는 3개월분까지 총 5,022,260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면에 거주하는 ○○○에게 [표 2] “신규 기초연금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1개월분 185,75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신규 기초연금 과소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연도	주 소 (읍면동)	대상자	생년월일	최 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 초 지급일	총 지급액	과소지급	
								개월	금액
계		13명							5,022,260
2018	○○면	○○○	1900.00.00.	2018.05.29.	209,960	2018.07.25.	209,960	1	209,960
	○○읍	○○○	1900.00.00.	2018.08.07.	250,000	2018.10.25.	250,000	2	500,000
	○○면	○○○	1900.00.00.	2018.08.30.	250,000	2018.11.23.	250,000	3	709,960
	○○읍	○○○	1900.00.00.	2018.09.07.	250,000	2018.12.24.	500,000	1	250,000
	○○읍	○○○	1900.00.00.	2018.10.26.	140,000	2018.12.24.	280,000	1	140,000
2019	○○읍	○○○	1900.00.00.	2019.01.28.	35,260	2019.04.25.	35,260	3	105,780

연도	주소 (읍면동)	대상자	생년월일	최 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 초 지급일	총 지급액	과소지급	
								개월	금액
	○○읍	○○○	1900.00.00.	2019.01.31.	87,860	2019.04.25.	87,860	3	263,580
	○○출장소	○○○	1900.00.00.	2019.02.28.	222,470	2019.05.24.	222,470	3	667,410
	○○읍	○○○	1900.00.00.	2019.07.30.	253,750	2019.11.25.	507,500	3	761,250
	○○읍	○○○	1900.00.00.	2019.09.10.	230,770	2019.12.24.	461,540	2	461,540
	○○면	○○○	1900.00.00.	2019.10.01.	164,420	2019.11.25.	164,020	1	164,420
2020	○○면	○○○	1900.00.00.	2020.11.17.	154,180	2021.02.25.	308,360	2	308,360
2021	○○면	○○○	1900.00.00.	2021.01.27.	240,000	2021.03.25	240,000	2	480,00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신규 기초연금 과다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연도	주소 (읍면동)	대상자	생년월일	최 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 초 지급일	총 지급액	과다지급	
								개월	금액
2018	○○면	○○○	1900.00.00.	2018.08.09.	185,750	2018.09.21.	371,500	1	185,75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가족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IX. 보육 예산지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되,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수급 영유아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여성가족과)은 [표 3] “90일 이상 국외체류 대상자 가정양육수당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면에 거주하는 ○○○에게 1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3] 90일 이상 국외체류 대상자 가정양육수당 과다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주 소 (읍면동)	대상자	생년월일	출국일자	90일 시점	과다 지급		
					지급기간	개월수	금액
○○면	○○○	00.00.00.	2018.07.08.	2018.10.06.	2018.11.	1	100,00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4-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제소득 미반영 지원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군수는 매년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의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그 밖의 금품은 수급자의 실제소득¹⁾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3편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연계²⁾되지 않는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금, 이·통장 직책수당 등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금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급자의 실제소득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수급자의 소득에 자동 반영되나, 지자체 지원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및 자료 입력 필요

보훈대상자에게 명예보훈수당(월 50,000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월 70,000원),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이장 수당³⁾(2018년부터 2019년까지 월 200,000원, 2020년부터 월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소득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주민복지과)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산정하여 [표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2018. 5월부터 2021. 4월까지 ○○면에 거주하는 ○○○ 등 7명에게 생계급여 11,95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주 소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현황				과다지급	
			구분	지급 개시	지급 최종	월 지급액	개월	금액
계	7명							11,950,000
○○면	○○○	1900.00.00.	참전명예수당	2018.08.	2021.04.	50,000	29	1,450,000
○○읍	○○○	1900.00.00.	보훈수당	2018.07.	2021.04.	70,000	30	2,100,000
○○읍	○○○	1900.00.00.	이장수당	2018.01.	2018.12.	200,000	12	2,400,000
○○읍	○○○	1900.00.00.	이장수당	2021.01.	2021.04.	300,000	4	400,000
○○읍	○○○	1900.00.00.	이장수당	2019.11.	2020.12.	300,000	14	1,600,000
○○면	○○○	1900.00.00.	이장수당	2019.01.	2019.12.	200,000	12	2,400,000
○○읍	○○○	1900.00.00.	이장수당	2020.01.	2021.04.	300,000	16	1,600,00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4-2. 신규 수급권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

3) 2020년부터는 이·통장 등 직책수당(회의수당포함)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시 20만원 범위내 공제 적용

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는데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는 등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주민복지과)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고 ○○읍에 거주하는 ○○○ 등 42명에게 [별표 1] “신규 생계급여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생계급여 21,371,730원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가 완도군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21. 5. 20.에 ○○면에 거주하는 ○○○ 등 24명에게 8,360,730원을 소급 지급하였다.

또한 [표 5] “신규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면에 거주하는 ○○○ 등 2명에게 90,11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5] 신규 생계급여 과다 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연도	성명	주 소 (읍면동)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		과다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	
계	2명						90,110
2019	○○○	○○면	2019.11.27.	527,160	2020.02.20.	2,108,640	30,100
2020	○○○	○○면	2020.12.22.	248,350	2021.02.19.	429,270	60,01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4-3. 장제급여 지급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가구당 750,000원(2020년 8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책임진 자가 장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주민복지과)은 2018. 5월부터 2021. 4월까지 사망자 60명의 수급자 가족 또는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별표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명세”와 같이 총 46,65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가족이나 실제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적극적으로 장제급여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장제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4. 주거급여 지급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에는 임차(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

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의 주거실태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1인 단독 주거급여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한 경우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주민복지과)은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면 ○○○ 등 18명에게 [표 6] “신규 주거급여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주거급여 4,832,07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6] 신규 주거급여 과소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연도	성명	주소 (읍면동)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		과소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계	18명							4,832,070
2018	○○○	○○면	2018.05.02.	36,970	2018.07.20.	73,940	1	36,970
	○○○	○○읍	2018.08.27.	140,000	2018.10.25.	140,000	2	280,000
	○○○	○○읍	2018.08.29.	120,000	2018.10.31.	120,000	2	240,000
	○○○	○○읍	2018.08.30.	106,840	2018.10.31.	106,840	2	213,680
	○○○	○○읍	2018.09.10.	140,000	2018.10.31.	140,000	1	140,000
	○○○	○○읍	2018.09.27.	140,000	2018.10.31.	140,000	1	140,000
	○○○	○○읍	2018.07.23.	84,000	2018.11.20.	168,000	3	252,000
2019	○○○	○○읍	2019.01.31.	140,630	2019.05.20.	140,630	4	562,520
	○○○	○○읍	2019.03.26.	93,340	2019.06.20.	93,340	3	280,020
	○○○	○○읍	2018.10.02.	88,200	2019.06.20.	88,200	8	705,600
	○○○	○○읍	2019.05.31.	147,000	2019.08.20.	147,000	3	441,000
2020	○○○	○○읍	2020.04.20.	158,000	2020.06.19.	158,000	2	316,000
	○○○	○○면	2020.09.04.	158,000	2020.10.20.	158,000	1	158,000
	○○○	○○읍	2020.09.24.	158,000	2020.11.20.	158,000	2	316,000
2021	○○○	○○읍	2021.01.08.	118,340	2021.03.19.	118,340	2	236,680

연도	성명	주 소 (읍면동)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		과소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	○○읍	2021.02.01.	46,900	2021.04.20.	46,900	2	93,800
	○○○	○○읍	2021.02.09.	46,900	2021.04.20.	46,900	2	93,800
	○○○	○○읍	2021.02.15.	163,000	2021.04.20.	163,000	2	326,00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중 ○○읍 ○○○ 등 8명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주거급여를 중단하여야 하나, 중단하지 않고 [표 7]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총 7,841,400원의 주거급여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7]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다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읍면동)	월 지급액	최종 지급일	입원일	퇴원일	과다지급		비고 (월 급여액)
							개월	지급액	
계	8명							7,841,400	
○○○	1900.00.00.	○○읍	104,400	2020.06.19.	2018.06.01.	입원중	22	1,963,200	2018년 월 84,000 2019년 월 88,200 2020년 월 94,800 2021년 월 97,800
○○○	1900.00.00.	○○읍	97,800	2021.04.20.	2019.08.01.	입원중	18	1,705,200	
○○○	1900.00.00.	○○읍	97,800	2021.03.19.	2019.10.01.	입원중	15	1,431,000	
○○○	1900.00.00.	○○면	97,800	2021.04.20.	2020.08.01.	입원중	6	580,800	
○○○	1900.00.00.	○○읍	97,800	2021.04.20.	2020.04.01.	입원중	10	960,000	
○○○	1900.00.00.	○○면	94,800	2020.05.20.	2020.01.01.	입원중	2	189,600	
○○○	1900.00.00.	○○읍	88,200	2021.04.20.	2018.10.01.	2019.01.31.	1	88200	
○○○	1900.00.00.	○○읍	84,000	2021.04.20.	2020.07.01.	2021.01.31.	4	382,200	
○○○	1900.00.00.	○○면	84,000	2021.04.20.	2018.05.01.	2018.08.31.	1	84,000	
○○○	1900.00.00.	○○면	88,200	2021.04.20.	2019.07.01.	2019.12.31.	3	264,600	
○○○	1900.00.00.	○○면	97,800	2021.04.20.	2020.09.01.	2021.01.31.	2	192,60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4-5.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군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

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 수당은 전부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지급할 때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지급사유가 중지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주민복지과)은 신규 장애수당 수급자로 결정된 ○○면 ○○○ 등 8명에게 [표 8] "신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780,000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표 9]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사망하여 수급권이 중지된 ○○면 ○○○ 등 2명에게 8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8] 신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과소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연도	사업구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최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지급		과소지급		비고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계	8명								780,000	
2018	장애수당	○○○	○○면	2018.08.31.	40,000	2018.11.20.	40,000	3	120,000	
2019	장애수당	○○○	○○읍	2019.03.26.	40,000	2019.06.20.	40,000	3	120,000	
	장애수당	○○○	○○읍	2019.01.29.	40,000	2019.04.19.	40,000	3	120,000	
	장애수당	○○○	○○면	2019.11.27.	40,000	2020.01.20.	40,000	2	80,000	
	장애수당	○○○	○○읍	2019.04.08.	40,000	2019.06.20.	80,000	1	40,000	
	장애인연금	○○○	○○면	2020.02.26.	320,000	2020.04.20.	440,000	1	120,000	장애아동 수당 40만 원 지급
2021	장애인연금	○○○	○○읍	2021.01.20.	70,000	2021.03.19.	70,000	2	100,000	
	장애수당	○○○	○○읍	2021.02.15.	40,000	2021.05.20.	80,000	2	80,00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9]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과다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연도	사업구분	대상자	주소 (읍면동)	지급정지		최종지급		과다 지급	
				변동일	사유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계	2명								80,000
2019	장애인연금	○○○	○○면	2019.12.30.	사망	2020.01.20.	40,000	1	40,000
2021	장애수당	○○	○○면	2021.02.26.	사망	2021.03.19.	40,000	1	40,00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수급자 117명에게 과소지급된 기초연금·생계·장제·주거급여·장애인연금·장애수당 70,295,330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24명에 대해 20,247,260원을 회수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관광과)

훈계대상자 완도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공중 위생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고 [표 1] “식품·공중위생업소 명세”와 같이 그 위생업소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표 1] 식품·공중 위생업소 명세

(단위 : 개소)

총계	식품 위생업소									공중 위생업소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통단란주점	집단급식소(위탁)	제과점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	기타	소계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	세탁	건물위생관리
1,842	1,520	755	160	104	53	20	106	122	200	322	119	11	164	24	4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서기 ○○○는 2017. 7. 14.부터 2021. 3. 31.까지 ○○과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식품 제조·가공영업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가 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관내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등 식품제조·가공 활동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관광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별표 1]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 위생업소 명세"와 같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57개 업소 75품목 중 ○○○ ○○ 등 11개 업소 17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 ○ 등 46개 업소 58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이 유통되는 등 식품 제조·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행정처분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정보 공표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84조에 따르면 군수는 폐기처분,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폐쇄조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위해식품 등의 판매업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가공, 소분·판매업만 해당한다),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을 지체 없이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따르면 군수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식품·공중위생업소가 폐기처분,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폐쇄조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위해식품 등의 판매업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보를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관광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별표 2] "행정처분 공표 미실시 명세"와 같이 영업자 86개소(2018년 35개소, 2019년 38개소, 2020년 13개소)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보를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식품 등 안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시·군에 위생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 식품위생 관련 자격¹⁾이 있는 자 또는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하되, 다만 위의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식품위생 관련 2주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식품위생감시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는 자를 식품위생팀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2주 이상의 식품위생 교육을 받은 이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관광과)은 2018. 9. 4.부터 2021. 5. 28.까지 식품위생분야 관련 자격이 없는 지방○○주사 ○○○ 등 4명을 식품위생부서에 배치하여 식품위생 관련 소정의 교육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표 3] “무자격자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명세”와 같이 부적정하게 임명하여 위생업소 출입·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3] 무자격자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명세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임명일	만료일
지방○○주사	○○○	1900.00.00.	2018.00.00.	2020.00.00.
지방○○주사	○○○	1900.00.00.	2020.00.00.	2021.00.00.
지방○○주사	○○○	1900.00.00.	2021.00.00.	재직 중
지방○○주사보	○○○	1900.00.00.	2021.00.00.	재직 중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식품위생에 관한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보건의 증진에 저해를 줄 우려가 있게 하였다.

1) 위생사, 식품기술사·기사·산업기사, 수산 제조기술사·제조기사·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등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영업정보를 미공표하는 등 식품·공중위생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서기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46개소 58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86개소에 대한 영업정보를 공표하며, 「식품위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양식 어업권 관리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수산경영과, 노화읍)

훈계대상자 ① 완도군 ○○○○과 지방○○○○사무관 ○○○

② 완도군 ○○○면 지방○○○○주사 ○○○

③ 완도군 ○○○읍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 개요

완도군은 2000년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338건, 3,093ha의 ○○가두리 양식어업권 개발 및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은 2020. 1. 3.부터 2021. 5. 28.까지 ○○○○과에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업무팀장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주사 ○○○은 2018. 3. 2.부터 2021. 1. 3.까지, 지방○○○○주사보 ○○○은 2021. 1. 4.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읍에서 양식어장 관리선 지정·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가두리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면허양식장 이용 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에 대하여 양식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2020~202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에 대하여 2020. 3. 31.까지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수산경영과)은 ○○어촌계와 ○○어촌계의 ○○양식업권이 [표 1] “○○ 양식업권 기간만료(말소) 명세”와 같이 2021. 4. 17.과 2021. 3. 13.에 면허기간이 만료되는데도 2020~202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재개발)에 반영하지 않아 3건의 ○○ 양식업권이 면허기간 만료로 말소되도록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 양식업권 기간만료(말소) 명세

(단위 : ha)

면허번호	양식방법	품종	어장위치	면적	어업권자	면허시작일	면허만료일	말소 사유
계	3건			25				
00000	가두리식	○○	○○ ○○	10.0	○○어촌계	2011.4.18.	2021.4.17.	2020/2021 어장이용 개발계획 미수립
00000	가두리식	○○	○○ ○○	7.5	○○어촌계	2011.3.14.	2021.3.13.	2020/2021 어장이용 개발계획 미수립
00000	가두리식	○○	○○ ○○	7.5	○○어촌계	2011.3.14.	2021.3.13.	2020/2021 어장이용 개발계획 미수립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기간만료 ○○ 가두리 불법시설물 철거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르면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철거기간이 지났어도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양식업권의 면허기간이 종료되면 30일 내에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도록 어업권 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수산경영과)은 [표 2] “기간만료 ○○가두리 불법시설 명세”와 같이 양식업권의 효력이 소멸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을 전혀 철거하지 않는 등 불법양식시설 정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표 2] 기간만료 ○○가두리 불법시설 명세

(단위 : ha)

면허번호	양식방법	품종	면적	어업권자	면허시작일	면허만료일	철거기한
계	3건		25				
00000	가두리식	○○	10.0	○○어촌계	2011.4.18.	2021.4.17.	2021.5.17.
00000	가두리식	○○	7.5	○○어촌계	2011.3.14.	2021.3.13.	2021.4.12.
00000	가두리식	○○	7.5	○○어촌계	2011.3.14.	2021.3.13.	2021.4.12.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양식어장 관리선 지정 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관리선 사용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어선이 사용되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양식업 또는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양식업 또는 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에 따르면 군수는 민원봉사과의 사무 중 ‘어장관리선 지정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양식어장 관리선을 지정할 때에는 그 양식어장의 면허 유효기간 및 해당 어선의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고 관리선 지정기간을 승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노화읍)은 [별표 1] “양식어장 관리선 지정 명세”와 같이 50척의 관리선에 대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무분별하게 관리선 지정기간을 승인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5. 양식어장 관리선 지정 해제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관리선 사용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어선이 사용되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이내,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양식업 또는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양식업 또는 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는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항에 따르면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호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별표 1] “양식어장 관리선 지정 명세”와 같이 양식업권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면세유 공급 또한 종료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노화읍)은 [별표 2] “면세유 부정 수급 명세”와 같이 관리선 27척이 면세유 2만리터(13,180,485원)을 부정 수급하도록 관리선 지정승인 취소 및 지정증 회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6. 어업권원부 정리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어업·양식업등록령」 제54조에 따르면 어업권·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 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어업권·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어업권 원부·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소멸 양식업권에 대해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수산경영과)은 [표 1] “전북 양식업권 기간만료(말소) 명세”의 3개소 양식어업권원부의 소멸등록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했다.

그로 인하여 75개소 양식어가에서 120억원(양식생물 79억원, 시설물 41억원)의 재산이 손실될 위험과 행정의 신뢰 상실 및 어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업무, 불법가두리시설물 철거 업무, 어업권 원부 정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사무관 ○○○, 양식어장 관리선의 지정·해제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말소된 ○○ 양식업권(3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면허처분하시고, 면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승인된 양식어장 관리선은 지정 취소 및 지정증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기간만료로 말소된 양식업권의 양식업권원부는 소멸 등록 원인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수산경영과)

내 용

1. 업무 개요

완도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 수산분야 공모사업에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에 91억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1) ○○○ ○○어업 육성사업 지방비 확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2019년 ○○○ ○○어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2019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했고 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수산경영과)은 [표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와 같이 국고보조금 21억원을 지원받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군비 2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반영하지 못하였고, 2020년에는 본예산 등에 편성요구도 하지 않는 등 지방비(군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총 70억원의 사업비가 포기되는 사례가 발생되도록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표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계		2개소	7,000,000	2,100,000	2,100,000	2,800,000	
2019	○○○ ○○어업 육성사업	○○○○ 법인	5,000,000	1,500,000	1,500,000	2,000,000	2021.05.18. (군→도)
		○○○○○○○ 조합법인	2,000,000	600,000	600,000	800,000	2019.10.22. (보조사업자→군) 2021.05.18. (군→도)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 ○○어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2019년 ○○○ ○○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회계연도가 경과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했고 사

업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성실히 반납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수산경영과)은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데도 [표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와 같이 ○○○○○○조합법인은 2019. 10. 22.에 포기서를 군으로 제출하였으나 완도군은 사업포기서를 즉시 전남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21. 5. 18. 감사기간 중에 ○○○○○○조합법인과 ○○○○조합법인의 사업포기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는 등 국고보조금 2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액 16,282,192원의 반납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표 2]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포기에 따른 반납액 명세

(단위 : 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반납액		
			합계	국비	이자액
계		2개소	2,116,282,192	2,100,000,000	16,282,192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1,511,630,137	1,500,000,000	11,630,137
		○○○○○○조합법인	604,652,055	600,000,000	4,652,055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 위생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3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 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 위생안전사업) 등의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명확히 하고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을 완료하여 세외수입으로 계상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수산경영과)은 [표 3] “부가가치세 및 이자액 미반납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448,801,480원과 이자액 292,506원을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3] 부가가치세 및 이자액 미반납 명세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 업 비	미반납금(국비, 도비, 군비)	
				부가가치세	이자액
계			9,112,487,000	448,801,480	292,506
2018	○○○○ 질병예방 백신사업(백신)	○○○○○○ 양식수협	2,240,000,000	101,818,180	21,480
2018	○○○○ 질병예방 백신사업(면역증강제)	"	41,760,000	1,898,180	400
2018	○○○○○구축사업	"	800,000,000	36,371,300	7,670
2019	○○○○ 질병예방 백신사업(백신)	"	1,982,160,000	90,098,180	64,426
2019	○○○○ 질병예방 백신사업(면역증강제)	"	243,680,000	11,076,360	7,920
2019	○○○○○구축사업	"	666,666,000	36,363,640	26,002
2020	○○○○ 질병예방 백신사업(백신)	"	2,122,134,000	115,752,720	111,312
2020	○○○○ 질병예방 백신사업(면역증강제)	"	349,420,000	19,059,280	18,328
2020	○○○○○구축사업	"	666,667,000	36,363,640	34,968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양식 어업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2,100,000,000원과 이자액 16,282,192원 및 ○○○ 위생안전사업 군비분(50%)을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224,400,740원과 이자액 146,253원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농업축산과, 완도읍,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의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후속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조합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 제5항 및 제20조의3 등에 따르면 군수는 농업법인이 조합원 5인 미충족,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사업범위 외 사업 영위 등 법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시정¹⁾하도록 명하거나, 해산명령²⁾ 청구하거나, 과태료³⁾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완도군은 2019. 6. 1.부터 2019. 11. 31.까지 6개월간 농업법인 174개소(영농조합 131, 농업회사 43)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조사

1)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2)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 1년 경과,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1년 경과, (공통) 사업범위 위반, 시정 명령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 장기 휴면

3)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 실태조사 불응, 설립 및 변경통지 미이행,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하였다.

따라서 완도군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시정 명령, 해산명령 청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통해 농업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농업축산과)은 174개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1]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대상 명세”와 같이 조합원이 5인 미만인 11개소, 비농업인의 출자제한을 위반한 1개소, 장기 미운영 중인 2개소 등 14개의 농업법인(영농조합 13, 농업회사 1)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1]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대상 명세

(단위 : 개소)

법인유형	위반유형				후속조치
	합계	조합원 5인 미만	비농업인 출자위반	장기 미이용	
계	14	11	1	2	시정명령 12 해산명령 2
영농조합	13	11	-	2	시정명령 11 해산명령 2
농업회사	1	-	1	-	시정명령 1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후 등기사항 변경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

명을 발급하여야 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⁴⁾를 벗어나면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농업법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면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완도읍,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농업법인의 등기사항에 사업 범위 외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표 2]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등기사항 미변경 법인 명세”와 같이 (주)○○○○ 등 10개 법인이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범위 외 사업이 등기상 포함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2]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등기사항 미변경 법인 명세

(단위 : m²)

법 인 주소지	법인명	사업범위 외 사업	농지취득 필지	면적	취득세 감면여부
계	10개소		20필지	50,724	
전남 ○○	(주)○○○○○	태양광 발전사업	완도군 ○○읍 ○○리 000-00번지 등 7필지	15,847	미감면
전남 ○○	(유)○○○○○	부동산 개발 분양 사업	완도군 ○○읍 ○○리 0-0번지	2,975	미감면
경남 ○○	(주)○○○	숲가꾸기사업, 관광숙박업	완도군 ○○읍 ○○리 000번지	1,795	미감면
전남 ○○	(주)○○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완도군 ○○면 ○○리 0000-0번지	20,209	미감면
전남 ○○	(주)○○○	게스트하우스, 농가레스토랑 시설사업	완도군 ○○면 ○○리 000-0번지	1,206	미감면

4)(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법 인 주소지	법인명	사업범위 외 사업	농지취득 필지	면적	취득세 감면여부
부산 ○○	(주)○○○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완도군 ○○면 ○○리 000-0번지 등 2필지	2,148	감면
부산 ○○	(주)○○○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완도군 ○○면 ○○리 000-0번지 등 2필지	2,148	감면
부산 ○○	(주)○○○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완도군 ○○면 ○○리 000-0번지 등 2필지	2,148	감면
부산 ○○	(주)○○○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완도군 ○○면 ○○리 000-0번지 등 2필지	2,148	감면
전남 ○○	(주)○○○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완도군 ○○면 ○○리 000번지	100	미감면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4. 농업법인 취득 농지 이용실태조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군수와 읍·면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기준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전수를 조사하며, 작물 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할 수 있고,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매년 9월부터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이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농업축산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4개 농업법인이 취득한 82필지 농지에 대한 2020년 이용실태조사를 하면서, 2020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농지와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9개 법인⁵⁾이 동일 날짜에 동일 장소

를 분할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위성사진으로도 영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농업경영을 한다고 부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30개 필지를 대상으로 2021. 5. 28. 감사일 현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 “농업법인 취득 농지 이용실태 명세”와 같이 완도읍 ○○리 000-00번지 등 21필지가 장기간 휴경상태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농업경영보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농업법인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14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된 10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을 변경하도록 하며, 앞으로는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를 일정 기간을 두고 행정정보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휴경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농지 처분 의무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5) 9개 법인: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신청일자: 2019.00.00., 대상농지: 완도군 ○○면 ○○리 000번지(15,372㎡)

전라남도

징계·훈계·시정·주의요구·통보

제 목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체육진흥과)

징계대상자 완도군 ○○○○과 지방○○주사 ○○○

징계의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① 완도군 ○○○○과 지방○○사무관 ○○○

② 완도군 ○○○○과 지방○○주사 ○○○

③ 완도군 ○○○○과 지방○○주사 ○○○

④ 완도군 ○○○○○○○실 지방○○주사 ○○○

⑤ 완도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2017. 00. 00. (주)○○○○과 “○○○형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공사”¹⁾(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 계약을 4,511,908,270원에 체결하여 2018. 00. 00. 사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본 공사의 건축 감리를 위해 2017. 00. 00. ○○건축사사무소와 “위 사

1) 사업규모 : 연면적 2,752.38㎡(지하1층 : ○○○, ○○○ 등, 지상1층 : ○○○ 등, 지상2층 : ○○○강당 등), 구조 :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조

업 감리용역” 계약을 97,630,780원에 체결하여 2018. 00. 00. 완료하였다.

2.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리자의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33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필요 시 촬영한 동영상)은 Digital 파일, CD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63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지침 제166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 후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사업 감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건축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일정 공정에 다다른 때에는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을 Digital 파일, CD 등으로 보관하도록 했어야 했다.

또한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

토·확인하여야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리고 공사감리자도 건축공사가 일정 공정에 다다른 때에는 공사감리 중간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했다.

나. 업무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1) ○○○의 경우

○○○은 2016. 7. 11.부터 2019. 7. 7.까지 ○○○○과 근무 중에 2017. 3. 30.부터 2018. 12. 24.까지 위 사업의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기간 중에 공사감독자가 반드시 비치해야 할 공사감독일지와 검측대장 등을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영장 공사와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 타일붙이기 등이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완도군 종합감사 기간 중에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 시설물 인수·인계계획서도 수립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2019. 00. 00.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여 2019. 00. 00.부터 00. 00.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2)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사사무소는 2017. 00. 00.부터 2018. 00. 00.까지 위 사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공사가 일정 공정에 다다른 때에는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발주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3. 공사감독자와 기성·준공검사자의 기성·준공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

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자로 하여금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성검사 시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하지 않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른 공무원을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나. 업무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1) ○○○의 경우

○○○은 2016. 7. 1.부터 2019. 7. 7.까지 ○○○○과 근무 중에 2017. 3. 30.부터 2018. 12. 24.까지 위 사업의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확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준공검사 전에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는데도 바쁘다는 사유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표 1] “사업 미시공·시공 소홀 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명세”와 같이 회수해야 할 약 21,724천원을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않고 있다.

[표 1] 사업 미시공·시공 소홀 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명세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62,106,550		40,382,027	△21,724,523
되메우고 다지기 (백호+램머 → 백호)	2,621 m³	9,291,445	2,621 m³	2,841,164	△6,450,281
토사 운반/ 단지 외 1km (덤프 15톤 → 덤프 24톤)	9,150 m³	37,460,100	9,150 m³	28,548,000	△8,912,100
유로폼 설치 및 해체	77.1 m²	1,609,924	-	-	△1,609,924
카스토퍼	36개소	1,744,668	24개소	1,163,112	△581,556
제비율		12,000,413		7,829,751	△4,170,662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차례의 기성검사(2017. 8. 11, 2018. 9. 19.) 시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사업의 공사감독자 겸 검사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1] “사업 미시공·시공 소홀 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명세”와 같이 사업 미시공·시공 소홀 부분이 있었는데도 검사를 소홀히 하여 시정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검사를 완료하였다.

그로 인하여 검사가 관련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미시공 및 시공 소홀 부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검사가 완료되어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의 경우

○○○는 2017. 7. 14.부터 2018. 9. 3.까지 ○○○○과 근무 중에 위 사업의 기성검사 공무원으로 임명받아 기성검사 업무를 3회(2018. 1. 26, 2018. 4. 20, 2018. 8. 8) 실시하면서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했는데도 검사를 소홀히 하여 “3항 나. 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의 경우

○○○은 2019. 9. 4.부터 2021. 1. 3.까지 ○○○○과 근무 중에 위 사업의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받아 준공검사를 1회(2018. 12. 26.)를 실시하면서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했는데도 검사를 소홀히 하여 ”3항 나. 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의 경우

○○○은 2017. 7. 14.부터 2018. 9. 3.까지 ○○○○과 근무 중에 위 사업의 담당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감독 및 기성검사 공무원이 실시한 기성검사 4회(2017. 8. 11, 2018. 1. 26, 2018. 4. 20, 2018. 8. 8.) 결과에 대하여 ○○○이 검토하고 ○○○가 협조한 공문 및 관련 서류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결재하여 ”3항 나. 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의 경우

○○○은 2018. 9. 4.부터 2019. 7. 7.까지 ○○○○과 근무 중에 위 사업의 담당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감독 및 기성·준공검사 공무원이 실시한 기성검사 1회(2018. 9. 19.) 및 준공검사(2018. 12. 26.) 결과에 대하여 ○○○이 검토하고 ○○○ 및 ○○○이 협조한 공문 및 관련 서류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결재하여 ”3항 나. 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6) ○○○의 경우

○○○는 2018. 9. 4.부터 2020. 1. 2.까지 ○○○○과에서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감독 및 기성·준공검사 공무원이 실시한 기성검사 1회(2018. 9. 19.) 및 준공검사(2018. 12. 26.) 결과에 대하여 ○○○이 검토하고 ○○○ 및 ○○○이 협조한 공문 및 관련 서류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결재하여 ”3항 나. 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시운전계획 미수립 및 시운전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 및 종류, 시운전 절차 등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기기점검, 예비운전, 시운전, 성능보장운전, 검수, 운전 인도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점검항목 점검표, 운전지침, 시험성적서, 성능시험성적서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사업의 기계설비 시방서 1. 자. 시운전에 따르면 수급자²⁾는 모든 공사완료 시 공정별 또는 종합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 안의 이물질 제거 및 원활한 기능 보장을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씻어내림)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³⁾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덕트⁴⁾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고 청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 일정 등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기기점검, 성능보장운전과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2) 현장대리인 ○○○(1900. 00. 00.)

3) 유체 속에 포함된 고형물을 제거하여 기기 등에 이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총칭

4) 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하여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했어야 했다.

또한 기계설비 시방서에 따라 수급자로 하여금 모든 공사완료 시 공정별 또는 종합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 안의 이물질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문화체육과, 現 체육진흥과)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림 1] “기계설비 현장 사진”과 같이 공사감독자와 수급자는 시운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2018. 12. 26.) 전에 시운전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림 1] 기계설비 현장 사진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기계설비 등이 시방서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준공되고, 수영장 운영에 미칠 수 있는 결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기계설비 등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

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 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공사 여부는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나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 중 위탁처리 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분리발주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 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문화체육과, 現 체육진흥과)은 위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양이 약 205톤(폐콘크리트 178, 혼합건설폐기물 27)으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공사감독공무원이 설계 내역서 등 사업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일괄발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지역사회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 상실을 초래하였다.

6.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

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검사 공무원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문화체육과, 現 체육진흥과)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2019년(2019. 11. 25.)과 2020년(2020. 2. 17.)에 각 1회씩만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2021. 5. 24. 감사기간 중에 현장방문 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그림 2] “하자 발생부분 현장 사진”과 같이 여러 곳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하자발생 시 적기에 보수를 하지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그림 2] 하자 발생부분 현장 사진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7.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태만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 따르면 초급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과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교육(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품질시험 자격을 갖춘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과 교육(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은 2016. 7. 1.부터 2019. 7. 7.까지 ○○○○과 근무 중에 2017. 3. 30.부터 2018. 12. 24.까지 위 사업의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2017. 00. 00. (주)○○○건설이 위 사업(연면적 2,752.38㎡) 착공계 제출 시 품질시험계획서가 아닌 품질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⁵⁾인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제출된 품

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질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공사 착공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8. 00. 00.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도 없이 (주)○○건설에게 공문(1장)으로 품질관리 승인 통보를 하였다.

또한 시공사가 발주자의 품질시험계획 승인도 없이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장에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으며 품질관리를 태만히 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을 준공처리 하였다.

그리고 당초 시공사에서 착공계 제출 시 품질관리자로 토목 특급인 ○○○ 배치되었으나 2018. 0월 00일경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 토목 고급)를 교체하면서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준공 시까지 품질시험 등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준수하고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품질시험계획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 및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⁶⁾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9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을 요청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문화체육과, 現 체육진흥과)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별표] “안전관리비 사용 명세”와 같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안전간판, 소화기 등’으로 집행하고 있는데도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4,770,750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별표] “안전관리비 사용 명세”와 같이 안전관리비 청구 시 구매 증빙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그림 3] “부적정 세금계산서 사진”과 같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판매하는 업을 가진 사업장이 아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소지한 ‘(유)○○○○○건설’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54,568,600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등 [표 2] “ 안전관리비 부당집행 명세”와 같이 전체 안전관리비 81,771,168천원의 약 73%에 달하는 59,339,350원을 부당 집행하고 있는데도 회수하지 않고 있다.

[그림 3] 부적정 세금계산서 사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공사) 면허 소지자 전자세금계산서 제출(2018. 9. 30.)	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공사) 면허 소지자 전자세금계산서 제출(2018. 10. 31.)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안전관리비 부당집행 명세

(단위 : 건, 원)

안전관리비 지급액	부당집행금액 환수액(①+②)	유형별 지적내용	
		①사용불가 항목	②사진 미첨부 및 세금계산서 부적정
81,771,168	59,339,350	4,770,750	54,568,60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비가 목적 외로 부당 사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등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형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추진 시 공사감독일지, 검측대장, 중요 시설물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형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 ② 공사감독자의 업무처리 미흡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사무관 ○○○, 지방○○주사 ○○○, 지방○○주사 ○○○과 기성검사,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 ○○○을 훈계하며(훈계)
- ③ 위 사업 미시공·시공 소홀 부분 등에 대하여 과다 집행된 21,724,523원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청구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59,339,35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시정)
- ④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가 겹치지 않도록 검사자 위임업무를 철저히 하며, 기성·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등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검토·확정하고 시운전 20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공자에게 기기점검, 예비운전, 시운전 등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한 후 시운전에 입회하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 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준공시설물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며,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 따라 초급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과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교육(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등 품질시험 자격을 갖춘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⑤ 건축법 제2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일정 공정에 다다른 때에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안전건설과)

훈계대상자 완도군 ○○○○사업소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2018. 7월부터 2021. 5월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충족 및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표 1]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행정처분 명세”와 같이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행정처분 명세

구 분	등록기준 미달 등											
	통보(접수) 건수				처리 건수 / 무혐의 건수				미처리 건수			
	계	자본금	기술인력	기타	계	자본금	기술인력	기타	계	자본금	기술인력	기타
합 계	58	30	10	18	58/55	30/30	10/9	18/16	3	-	1	2
2018. 7.~12.	29	14	7	8	29/28	14/14	7/6	8/8	1	-	1	-
2019년	16	11	1	4	16/16	11/11	1/1	4/4	-	-	-	-
2020년	11	5	2	4	11/9	5/5	2/2	4/2	2	-	-	2
2021년	2	-	-	2	2/2	-	-	2/2	-	-	-	-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은 2016. 7. 11.부터 2017. 7. 13.까지 ○○○○과에서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감독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¹⁾, 보증가능금액확인서²⁾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³⁾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건설업자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안전건설과)은 2016. 4월부터 2020. 4월까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로 [별표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혐의업체 행정처분 미조치 명세”와 같이 6건을 통보받았는데도 2021. 5. 58. 감사일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주)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혐의업체로 통보받은 2016. 00. 00. 이후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혐의업체 완도군 발주사업 수주 명세”와 같이 완도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전자견적방법으로 4건(계약금액 216,358천원) 수주하였고, ○○○○(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혐의업체로 통보받은 2016. 00. 00. 이후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완도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전자견적방법으로 3건(계약금액 206,904천원) 수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미발급 혐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1)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은 업종별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음

2)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계약보증 등(입찰보증 제외)의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며, 금융기관 등은 건설사업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고 있음

3)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4] 시·군 권한위임사항 :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안전건설과)은 2016. 4. 1. 국토교통부로부터 [별표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혐의업체 행정처분 미조치 명세”와 같이 ○○○○(주)이 ○○지구 ○○○ 지하수영향 해소대책사업 시공 시 굴삭기 1대의 건설기계대여대금⁴⁾ 지급보증 미발급 혐의업체임을 통보받고서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82일 경과한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소홀이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로 통보받은 6건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미발급 혐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4) 대여기간 : 2015. 00. 00.~2015. 00. 00, 대여대금 7,777천원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기획예산담당관, 환경산림과, 안전건설과)

훈계대상자 완도군 ○○면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표 1] “재난관리기금 명세”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다.

[표 1] 재난관리기금 명세

(단위 : 천원)

총 적립액	2019년 이월금	2020년 적립액	2020년 도비 보조금	2020년 예금이자
1,204,493	882,019	308,537	4,820	9,117

구 분	법정 적립액	적립액의 15%금액	정기 예금액	정기예금 연이율(%)	일반 예금액	일반예금 연이율(%)
2018년	549,391	82,408	418,689	1.35	130,702	0.7
2019년	882,019	132,302	554,890	1.25	327,129	0.7
2020년	308,537	46,280	-		308,537	0.7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서기 ○○○은 2018. 9. 4.부터 2020. 6. 30.까지 ○○○○과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재난관리기금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5종의 대장¹⁾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등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안전건설과)은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등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담당자가 전산파일(이호조) 및 통장으로만 기금을 관리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록·보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2020년도 정기예금 계좌를 확인한 결과 고금리로 관리해야 하는 정기예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만기일(2020. 10. 28.)로부터 46일이 경과한 2020. 12. 14.에서야 농협은행에 재예치하였고, 매년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

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4. 적립금(의무예치금액) 관리대장, 5. 적립금(해당연도 사용기금액) 관리대장

로 예치·관리 하도록 되어있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총액의 15% 이상)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예금 통장에 관리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 포함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안전건설과)은 [표 2]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세”와 같이 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을 완도군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심의위원회 운영을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표 2]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세

(단위 : 명)

기금명	구성일	심의위원회 위원			기금운용조례제정일	담당부서
		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재난관리기금	2015. 10. 30.	11	11	-	2005. 6. 28.	안전건설과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참여 없이 심의하게 되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재난관리기금운용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정기회의에서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안전건설과)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재난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표 3]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심의위원회 이행 명세(2018~2020년)”와 같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면심의를 실시한 뒤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기금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표 3]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심의위원회 이행 명세(2018~2020년)

(단위 : 천 원)

구 분	수입 결산			지출 결산			심의 이행여부
	내역	수입계획	수입액	내역	지출계획	지출액	
2018년	예치금 회수 등	538,491	468,680	예치금 등	538,491	841,497	×
2019년	예치금 회수 등	457,508	942,760	예치금 등	457,508	828,647	×
2020년	예치금 회수 등	925,788	930,608	예치금 등	925,788	489,068	×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5.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안전건설과)은 “2019년 ○○○○○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총 4회 6,000천원을 집행하면서 동일인(2명)에게 3회에 걸쳐 2,700천원을 현금으로 집행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문제점을 예상하고 시정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지역특성상 민간전문가들이 심의위원 위촉을 회피하여 부득이 내부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용을 소홀히 한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등 기금운용 상황을 기록·보전하는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 ○ ○ ○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문화예술과)

훈계대상자 완도군 ○ ○ 면 지방 ○ ○ 주사 ○ ○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 ○ 면 ○ ○ 리 일원을 문화마을 및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표 1] “○ ○ ○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명세”(이하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 한다)와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 ○ ○ 복원 공사를 추진 중이다.

[표 1] ○ ○ ○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계약기간)	사업내용	계약상대자(지분) - 해당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1,000 (2020. 00. 00. ~2020. 00.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거리 조성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리 디자인 설계휴게시설, 가로경관 등 설치 조성을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과업 구간 내 조형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및 실시 설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 ○ ○ ○ ○ ○ (85%) - 산업디자인(주)○ ○ ○ ○ ○ (15%) - 엔지니어링(도로, 공항, 조경, 교통, 도시계획)
적거지 복원공사	283,443 (2021. 00. 00. ~2021. 00.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안채 복원 1식 61.65㎡행랑채 복원 1식 11.52㎡슬레이트 철거 28㎡폐기물 등 처리 5.3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주)(100%) - 토목건축공사업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 ○ ○ 주사 ○ ○ ○ 는 2020. 1. 3.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 ○

○과에서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6절 제1조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르면 계약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과업 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완도군은 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위 자격을 모두 갖추었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제안요청서에 참가 자격을 제한하였다.

아울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으로 문화거리 조성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디자인 설계, 휴게시설 설치 및 가로경관 조성 등으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를 하고, 제안서 평가 후 계약상대자((유)○○○○○○○○ 및 (주)○○○○)를 선정하고 과업 내용을 협상하여 최종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완도군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안 요청서 및 협상으로 결정된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용역 결과물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문화예술과)은 용역 진행 과정에서 ○○○ ○○○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과업에 포함하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계약금액 또한 조정하지도 않은 채 계약상대자((유)○○○○○○○○ 및 (주)○○○○)에게 요구하여 결과물을 납품 받았다.

3.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23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상대자((유)○○○○○○○○ 및 (주)○○○○)에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 과업을 지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 설계는 별도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문화예술과)은 계약상대자인 (유)○○○○○○○○ 및 (주)○○○○

○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았고, 건축사도 보유하지 않은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설계를 요구하여 납품을 받았다.

4.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공사비 산출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 제5조 나호에 공사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원가 계산을 하는 때에는 공사의 규모·내용·공종 등을 고려하여 공사에 필요한 노무량 및 노무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공사 원가계산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문화예술과)은 ○○○ 적거지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복원공사 원가계산서에 노무비를 산정하면서 석공, 지붕잇기공, 미장공 등의 단가를 문화재 직종 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를 계상하고서도 문화재 전문 수리업체가 아닌 일반 건설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고, 노무비 산정 직종을 일반 건설 직종으로 변경하여 [표 3] “공사비 감액 명세”와 같이 9,29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감액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공사비 감액 명세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감 액
계	211,370,684	202,076,839	9,293,845
○○ 석공사	5,990,663	5,285,277	705,386
○○ 목공사	38,951,668	38,500,707	450,961
○○ 지붕공사	18,779,769	18,412,144	367,625
○○ 미장공사	37,122,563	33,812,009	3,310,554
○○ 온돌공사	12,300,725	11,897,107	403,618
○○○ 석공사	1,976,839	1,752,067	224,772
○○○ 목공사	10,793,945	10,675,717	118,228
○○○ 지붕공사	5,068,035	4,997,965	70,070
○○○ 미장공사	8,007,972	7,294,235	713,737
제 경 비	72,378,505	69,449,611	2,928,894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① ○○○ 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를 소홀히 한 당시 업무 담당팀장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② 적거지 복원공사 노무비를 일반 건설 직종으로 변경하여 9,293,000원을 감액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민원봉사과)

훈계대상자 완도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2018. 7월부터 2021. 5월까지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1,436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다.

지방○○서기 ○○○는 2018. 1. 9.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역개발공채 매입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한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고, 시·군에서는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개발행위허가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민원봉사과)은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역개발공채 매매 명세”와 같이 총 8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이 지역개발공채 9,740천원을 매입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3.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연장이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민원봉사과)은 2018. 00. 00. ○○면 ○○리 000-0번지에 농어가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 한 개발행위 허가기간(2019. 12. 31.)이 508일이 지난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의견청취,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별표 2] “개발행위 허가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88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짧게는 58일에서 길게는 688일이 경과되었는데도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0조,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

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민원봉사과)은 2018. 00. 00. ○○읍 ○○리 000-0 외 2필지에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이행보증금 10,565천원에 대한 보증증권의 보증기한이 2020. 6. 30.에 만료되어 2021. 5. 28. 감사일 현재 294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지 않는 등 [별표 3]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보증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27건의 이행보증증권 107,272천원이 보증기한을 경과하였는데도 연장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하는 조례의 기본 취지 및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공무원 지방 ○○서기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 가능한 5건 6,170천원은 매입하도록 조치하며, 허가기간 경과된 88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하고, 보증기한 경과된 27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재예치하거나 보증기한이 연장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축물 정기점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민원봉사과)

훈계대상자 완도군 ○○○○과 지방○○서기보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2020. 5.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¹⁾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건축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서기보 ○○○는 2020. 6. 12.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 절차를 해당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1) 2020. 5. 1. 「건축물관리법」 최초 시행

따라서 완도군은 사용승인일이 5년 이상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²⁾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알려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민원봉사과)은 [별표 1]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명세”와 같이 ○○읍 ○○리 0-000 ‘완도 ○○○○○○○센터’ 등 20건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데도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393일이 지나도록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건축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3.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업무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물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³⁾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되는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는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 12. 31.까지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보강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건축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2) 제1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호: 집합건축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

해당되는 건축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건축물이 있을 경우 그 건축물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2020. 11. 30.까지 통지하여야 했다.

한편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 및 화재 사고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민원봉사과)은 [별표 2]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명세”와 같이 ○○읍 ○○리 000-0 ‘완도 ○○○ ○○○집’ 등 2건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이 있는데도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179일이 지나도록 건축물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지 않는 등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건축물 관리자들이 건축물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을 상황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담당 공무원 지방○○서기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제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 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공공건축사업 용역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문화예술과, 세무회계과)

훈계대상자 ① 완도군 ○○면 지방○○주사 ○○○

② 완도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2020. 00. 00. 완도군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21. 00. 00. ○○○○ 현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각각 추진하였다.

지방○○주사 ○○○는 2020. 1. 3.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완도군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담당팀장으로, 지방○○서기 ○○○은 2021. 1. 4.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 현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은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와 같이 설계비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

설계비 추정 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 미만	필수	×	선택	선택
5천만원 ~ 1억원 미만	필수	×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 (우선적용)

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자료집 발췌

따라서 완도군은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건축기획 업무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문화예술과, 세무회계과)은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명세”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필수 또는 의무적인 사전 행정절차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하였다.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명세

(단위 : 천원)

용역명	발주부서	추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기획 업무	사전 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완도군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예술과	93,000 (90,949)	2020.00.00.	부	대상 아님	부	대상 아님
○○○○ 현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	세무회계과	78,000 (76,934)	2021.00.00.	부 (과업에 포함)	대상 아님	부 (과업에 포함)	대상 아님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세무회계과는 사업부서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의뢰 받아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공공건축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로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용역 발주 의뢰한 당시 담당 공무원 지방○○주사 ○○○와 지방○○서기 ○○○을 혼계하시기 바랍니다.(혼계)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상하수도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 1] “일반수도 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일반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일반수도 사업 추진 명세

(단위 : km,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등			
계	8건	34.14	31,644	28,442	3,202			
1	○○ ○○○ 시설공사	14.07	11,740	10,280	1,460	2014.03.03. ~2020.06.30.	○○○○(주)외1	건설 사업 관리
2	○○읍 ○○○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08	399	340	59	2018.12.28. ~2019.12.29.	(주)○○○○	-
3	○○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3.16	3,865	3,632	233	2020.09.23. ~2021.12.19.	(주)○○○○	-
4	○○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3.78	4,872	4,336	536	2020.09.23 ~2021.12.19.	○○○○(주)	-
5	○○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5	4,477	4,059	418	2020.09.23 ~2021.12.19.	○○○○(주)	-
6	○○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2.7	4,077	3,816	261	2020.09.23 ~2021.12.19.	○○○○(주)	-
7	○○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28	1,400	1,263	137	2020.09.23 ~2021.12.19.	(주)○○○○	-
8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57	814	716	98	2019.12.05 ~2020.06.01.	○○○○(주)	-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완도군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표 2]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명세

(단위 : km,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등			
계	3건	12.25	12,369	8,566	3,803			
1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2.23	2,144	1,495	649	2019.07.12. ~2021.06.21.	○○○○건설(주)	건설사업관리
2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62	4,363	3,003	1,360	2020.08.31. ~2022.08.30.	○○○○(주)	건설사업관리
3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40	5,862	4,068	1,794	2021.01.20. ~2023.01.19.	○○○○○○(주)	-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5항 및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행정안전부)」Ⅲ. 집행관리 기준에 따르면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지 변경 시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5. 28. 감사일 현재 [표 3] “○○ ○○○ 설치공사 변경계약 명세”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변경승인 없이 대상지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3] ○○ ○○○ ○○○ 설치공사 변경계약 명세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내용	금 액	반영 사유	비 고 (반영일)
당초	○○○ 시설 설치 - 제수보(H1.0*B0.5m) L=20m - 차수벽(H=2.0m) L=40m - 차수벽(H=3.5m) L=78m	350	- ○○ ○○○ ○○○ 사업지구 (환경부)와 중복되어 매년 물 부족 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업 지구로 대상지(○○면 ○○도 → ○○읍 ○○도) 및 사업내용 변경 시행	2019. 00. 00.
변경	○○○○ 교체사업 - L형 옹벽(H=5.0m) L=50m - U형 개거(1.0*1.0m) L=100m - 급·송수관로 L=1,080m	399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 ○○○ ○○○ 시설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당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일반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5. 28. 감사일 현재 준공된 “○○ ○○○ 시설공사”에 취수탑 기둥 보강을 위해 수중콘크리트 타설 시 잠수부를 1m³ 당 4인 1조로 투입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나 3인 1조로 잠수부를 투입하고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미투입된 1인에 대한 공사비 25,520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추진 중인 일반수도 사업 및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설계에 과다 반영되어 해당 공종이 불필요한데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은 현장이 다음과 같이 발생 하였다.

①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5건

상수관로 매설 시 차수용 가시설 설치 전에 통신관로 등의 지하매설물 위치를 시설물 관리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지하시설물 확인용 터파기(129개소)

공정이 불필요한데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2,807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

② ○○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굴착 토사를 임시 적치장으로 운반한 후 현장으로 재운반하여야 하나 임시 적치장을 운영하지 않아 운반비가 불필요한데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40,639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

③ ○○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품질시험비 내 반영된 품질 차량 임대료(17개월), 현장사무소 내 보관 중인 관급자재 관리를 위해 반영된 인건비(보통인부, 20개월) 및 가설 흙막이 공사를 3개월(강제류 손료 15%)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데도 6개월(강제류 손료 30%)로 계상된 사업비가 불필요한데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42,990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

④ ○○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로 설치로 담장 블록 헐기 및 복구가 예상되어 블록 쌓기, 미장 외벽 등을 반영하였으나, 관로 노선 변경으로 원상복구가 불필요한데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41,765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한 25,520,000원을 회수하고, 과다 설계된 148,201,000원을 감액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